공갈·상해

[울산지방법원 2011. 8. 10. 2011고정101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손은영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